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감독관 제도 신설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국내에서 최초로 건조된 최신 수상구조함인 통영함이 구조에 투입되지 못한 것에 대한 국민적 비난이 커지자 통영함에 대한 납품비리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통영함의 납품비리로 인하여 방위사업 비리에 대한 비난이 커지자 정부에서는 2014. 11. 21. 범정부적 차원의 방위사업 비리 합동수사단을 4개팀 총105명 규모로 구성하여 대검찰청 반부패부 산하 반부패특별수사본부 소속으로 하고 서울중앙지검에 사무실을 설치하여 수사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합수단의 수사결과에 따라, 정부는 2015. 10. 29. 방위사업 비리 근절 대책으로 비리를 상시 감시하는 방위사업감독관을 신설하여 법률 전문성을 갖춘 조사감찰 전문가를 외부에서 개방형으로 임용하여 사업검증조사, 비리 예방, 법률 지원 및 소송 등을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후속조치로 2015. 12. 31.자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를 개정하여 국장급의 방위사업감독관직을 신설하였습니다. 이하에서는 개정된 방위사업감독관 제도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기존 법무조직

기존의 법무조직인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의 주요 임무는 방위사업법 제8조에 따라 국가의 재정적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요 사항에 대한 법률적 문제에 대하여 사전 검토 및 소송 등의 임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부이사관의 개방형 계약직으로 임명을 하였으며, 일반 중앙부처의 법무조직과 동일하게 방위사업차장 이하의 기획조정관 소속으로 편제를 두었습니다. 구성원은 변호사, 변리사, 군법무관 등 전문직 24명과 일반 행정직 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내부 운영은 항공, 함정, 기동화력, 지휘정찰, 유도무기, 전력운영 등 사업별로 구분하여 업무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2. 신설 방위사업감독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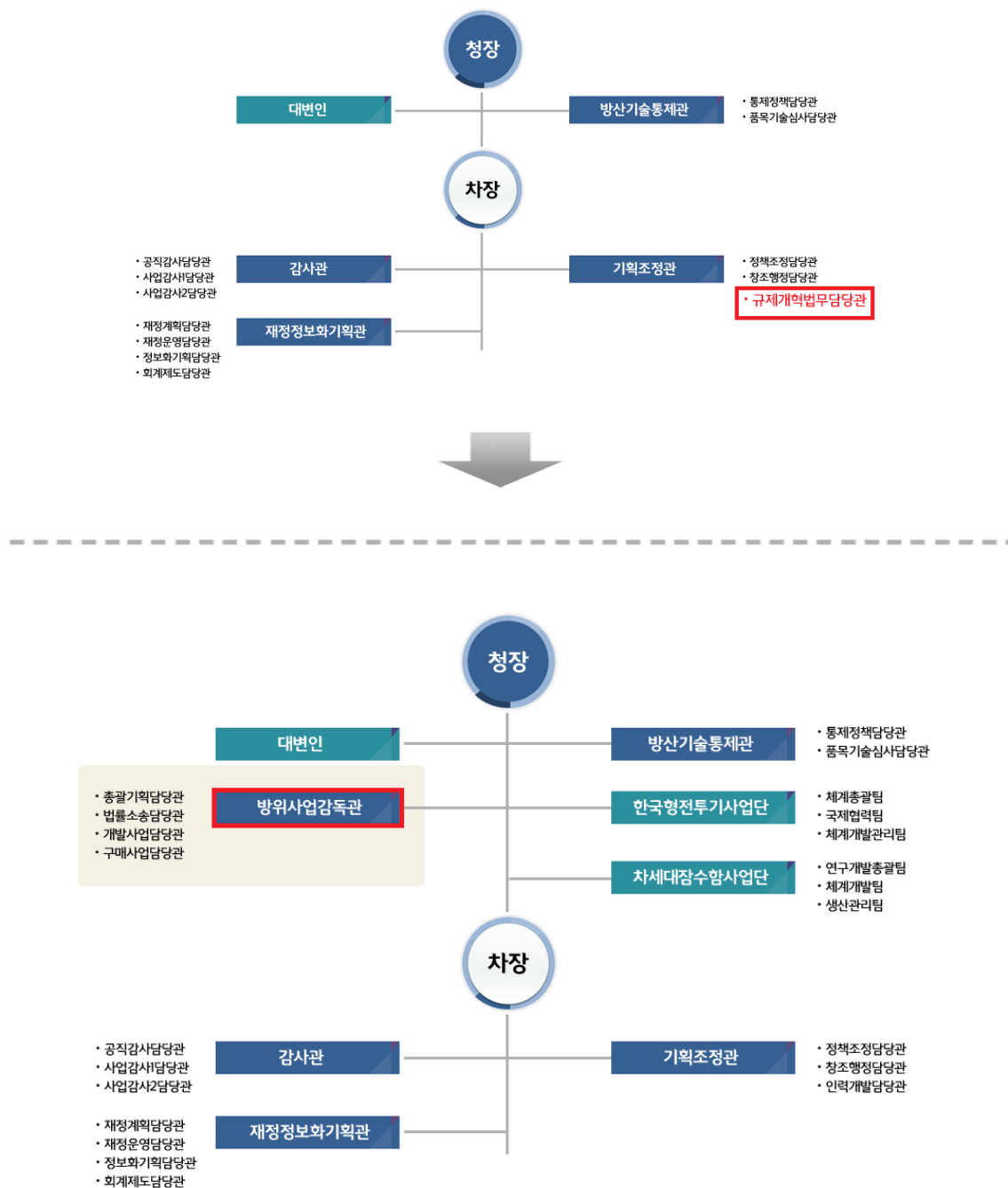
새로이 신설되는 방위사업감독관은 미국 국방부의 국방계약감사기구(Defence Contract Audit Agency, DCAA)의 기능을 기존의 법무실에 추가하여 방위사업 비리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로, 기존의 법무조직에 총괄기획담당관, 개발사업담당관, 구매사업담당관의 3개 과를 추가 신설하고, 이를 담당할 국장급의 방위사업담당관을 신설하였습니다.

방위사업감독관은 비리의 사전 예방시스템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어, 방위사업청에서 수행하는 주요 방위사업의 착수진행 및 계약체결을 실시간 감시할 수 있도록 사전 사업검증조사, 정보수집 기능의 업무가 새로이 추가되었습니다.

기존의 법무조직에서 수행하던 방위사업의 착수 및 제안서 평가, 구매결정 등 주요 단계에서의 사전 법률검토와 방위사업 관련 소송의 수행은 그대로 수행합니다.

방위사업감독관은 방위사업청장 직속으로 운영되며, 법령상으로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게 되어 있으나, 초임 감독관은 부장검사가 파견되었습니다.

그리고 방위사업감독관 소속하에 새로이 신설되는 총괄기획담당관, 개발사업담당관, 구매사업담당관 등 3개의 과는 추가된 업무인 방위사업과 관련한 정보수집 및 사전 비리예방, 검증 조사의 임무를 수행하고, 기존 법무조직은 법률소송담당관으로 명칭을 바꾸어 기존의 사전 법률검토 및 소송수행 업무를 담당합니다.



한편, 법령상 방위사업감독관 소속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으로 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총괄기획담당관과 법률소송담당관도 합수단 및 특수부 출신 검사가 파견되었습니다.

방위사업감독관실의 정원은 약 70여명으로 정해졌으며, 기존의 법무조직을 고려하면 약 40여명의 인원이 추가될 예정이고, 방위사업감독관과 총괄기획담당관 조직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라 201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입니다.

3. 향후 전망

1) 방위사업 비리 예방효과

방위사업감독관 제도의 신설취지 및 추가 신설된 3개 과의 임무가 방위사업 비리 예방을 위한 정보수집 및 사전 비리 예방, 검증조사의 업무이고, 초임 감독관 및 과장이 검사로 임명된 점을 고려했을 때 방위사업 비리에 대한 사전적 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 됩니다. 나아가 이를 통해 방위사업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부수적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해 볼 수 있습니다.

2) 사업지연의 우려 예상

방위사업감독관의 신설에 따라, 앞으로 방위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방위사업감독관의 사전 검증이 있어야 하므로 법률검토 이외에 검증에 필요한 시간이 추가로 소요되어 사업진행상 의사결정의 지연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3) 적기 전력화 차질 우려

그 동안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국가안보의 공백을 우려하여 무기체계의 전력화시기를 중시하였으나, 앞으로는 법적 절차에 따른 사업수행 및 비리 예방 등 투명한 사업추진이 향후 사업추진에서 보다 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므로 전력화시기를 맞추지 못하는 사업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4) 절차의 투명성 중시에 따른 분쟁의 증가

방위사업 비리의 사전 예방을 위한 사전 검증 및 조사업무의 강화는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는 있으나, 방위사업청 담당자들의 위임된 기능의 결심 회피, 개인적 판단의 유보 및 보수적 판단 증가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개연성이 있어 방산업체와의 유기적 관계가 경직될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의 의사결정에 승복하지 못하는 경우, 소송 등 법적 분쟁이 증가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시사점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방위사업을 수행하는 정부, 정부 관련 연구기관 및 업체들은 그 동안 관행으로 여겨져 왔던 사항들도 향후에는 모든 부문에서 사전 검증을 받게 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업절차가 관련 법령과 기준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 수립 단계부터 그 이행 및 사업종료에 이르기까지 사업 전반에 대한 제반 내부규정이나 지침 등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고, 특히 방위사업을 수행하는 업체로서는 그 동안 관행으로 수행하여 왔던 사항들도 계약내용 및 절차, 규정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더욱 요구되며,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 | |
|--------------|------------------|------------------------------|
| ● 고 석 파트너변호사 | TEL. 02 316 4072 | E-Mail. sko@shinkim.com |
| ● 조인형 파트너변호사 | TEL. 02 316 1615 | E-Mail. ihcho@shinkim.com |
| ● 김용홍 고문 | TEL. 02 316 4017 | E-Mail. yhongkim@shinkim.com |

Chambers Asia-Pacific Awards 2014
South Korea Law Firm of the Year : Shin & Kim



SHIN&KIM
법무법인 세종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s regular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